

남포항 태왕아너스 입주자모집공고문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안내사항
 - 남포항 태왕아너스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방지에 따라 주택전시관 관람이 방문예약제 및 사이버 주택전시관(<http://phhonors.com>)으로 병행하여 운영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예방을 위한 안내사항(주택전시관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향후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시간을 지정하여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하신 날짜 및 시간 외에는 관람이 불가합니다.
 - 마스크, 비닐장갑 및 덧신 미착용, 손소독제 미도포, 열화상카메라 또는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 37.5도가 넘을 경우, 주택전시관 안내 요원의 협조에 불응하는 경우 입장이 불가합니다.
 - 포항시 공고 제2020-1509호에 따라 포항시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제49조제1항제2의4호에 의거하여 처분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남포항 태왕아너스는 분양 상담전화(054-273-0700) 및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자,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11.1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12.03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포항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건립으로 유입되는 초등학교는 사업지 인근 신설 초등학교(가칭 용산초)에 배정 예정입니다. (단, 본 사항은 포항시교육지청의 계획으로 인해 향후 별도의 통지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1항제4호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1항[별표3]에 의거하여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없습니다.(단, 향후 관련법령 등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공공·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 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해당청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해당청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03.)현재 포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포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남·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정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 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자촉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월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자촉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자촉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자촉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3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phhonors.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멸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 2020.0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사전서류접수 (부적격, 적격 자격 검증)	계약체결
일 정	2021년 12월 13일(월)	2021년 12월 14일(화)	2021년 12월 15일(수)	2021년 12월 23일(목)	2021년 12월 24일(금) ~ 2022년 1월 1일(토)	2022년 1월 3일(월) ~ 2022년 1월 5일(수)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건본주택 방문 (10:00 ~ 17:00)	
장 소	- 사업주체 건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당사 건본주택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 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전예약 방식 및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 예정임	당사 건본주택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건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 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O	O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O	O	X	X

■ 2021.11.16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포항시 공동주택과-38585호(2021.12.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1188-24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최고 18층 6개동 총 343세대

[특별공급 168세대(일반[기관추천] 32세대, 다자녀가구 32세대, 신혼부부 64세대, 노부모부양 10세대, 생애최초 30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04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1000886	01	059.8412	59	59.8412	20.7494	80.5906	35.3591	115.9497	32.4135	68	6	6	12	2	6	32	36	4
		02	069.7632A	69A	69.7632	23.6615	93.4247	41.2219	134.6466	37.7879	34	3	3	6	1	2	15	19	2
		03	069.7774B	69B	69.7774	24.4806	94.2580	41.2303	135.4883	37.7956	34	3	3	6	1	2	15	19	2
		04	069.6684C	69C	69.6684	23.1190	92.7874	41.1658	133.9532	37.7365	105	10	10	20	3	10	53	52	6
		05	084.8442	84	84.8442	28.0209	112.8651	50.1330	162.9981	45.9566	102	10	10	20	3	10	53	49	6
	합 계										343	32	32	64	10	30	168	175	20

• 특별공급 세대수는 총공급세대수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적의 조정함.

■ 주택형 표시 안내

(청약 시) 주택형	059.8412	069.7632A	069.7774B	069.6684C	084.8442
약식 표기(타입)	59	69A	69B	69C	84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문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합니다. 단,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원]

주택형 (약식표기)	동별	공급 세대수	층 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 (10%)		중 도 금 (60%)						잔 금 (30%)
					대지비	건축비	계	1회	2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계약시	계약 후 1개월 내	2022.04.15	2022.08.15	2022.12.15	2023.04.15	2023.08.15	2023.12.15	
59	103동1호,2호 106동1호,2호	68	2~5층	16	64,502,000	176,698,000	241,200,000	10,000,000	14,120,000	24,120,000	24,120,000	24,120,000	24,120,000	24,120,000	24,120,000	72,360,000
			6층이상	52	64,502,000	179,198,000	243,700,000	10,000,000	14,370,000	24,370,000	24,370,000	24,370,000	24,370,000	24,370,000	24,370,000	73,110,000
69A	102동 1호,2호	34	2~5층	8	75,197,000	204,403,000	279,600,000	10,000,000	17,960,000	27,960,000	27,960,000	27,960,000	27,960,000	27,960,000	27,960,000	83,880,000
			6층이상	26	75,197,000	207,303,000	282,500,000	10,000,000	18,250,000	28,250,000	28,250,000	28,250,000	28,250,000	28,250,000	28,250,000	84,750,000
69B	103동3호 106동3호	34	2~5층	8	75,213,000	206,987,000	282,200,000	10,000,000	18,220,000	28,220,000	28,220,000	28,220,000	28,220,000	28,220,000	28,220,000	84,660,000
			6층이상	26	75,213,000	209,887,000	285,100,000	10,000,000	18,510,000	28,510,000	28,510,000	28,510,000	28,510,000	28,510,000	28,510,000	85,530,000
69C	102동3호,4호 103동4호,5호 106동4호,5호	105	1층	3	75,095,000	205,205,000	280,300,000	10,000,000	18,030,000	28,030,000	28,030,000	28,030,000	28,030,000	28,030,000	28,030,000	84,090,000
			2층	6	75,095,000	211,005,000	286,100,000	10,000,000	18,610,000	28,610,000	28,610,000	28,610,000	28,610,000	28,610,000	28,610,000	85,830,000
			3~5층	18	75,095,000	213,905,000	289,000,000	10,000,000	18,900,000	28,900,000	28,900,000	28,900,000	28,900,000	28,900,000	28,900,000	86,700,000
			6층이상	78	75,095,000	216,905,000	292,000,000	10,000,000	19,200,000	29,200,000	29,200,000	29,200,000	29,200,000	29,200,000	29,200,000	87,600,000
84	101동1호,2호 104동1호,2호 105동1호,2호	102	2~5층	24	91,453,000	246,347,000	337,800,000	10,000,000	23,780,000	33,780,000	33,780,000	33,780,000	33,780,000	33,780,000	33,780,000	101,340,000
			6층이상	78	91,453,000	249,847,000	341,300,000	10,000,000	24,130,000	34,130,000	34,130,000	34,130,000	34,130,000	34,130,000	34,130,000	102,390,000

■ 공통사항

- 저층 우선 배정세대(20세대)는 총 공급세대(343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 없이 청약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됩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면적표현은 소수점 넷째 자리 제곱미터(㎡)까지 표현되며,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기준으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산출 후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지상층 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보안 및 설비관련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기타 지하층 면적입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지하 피트 등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지적 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총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총,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총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아파트의 경우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연체료 납부시 토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주택가격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키폭출일 이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및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선택 품목(시스템 에어컨 등) 미포함 금액이며, 주택공급계약 체결 후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무상제공이며, 발코니 미확장 및 실별, 위치별 선택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공동주택)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익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예금 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에 게재된 영상은 건립세대, 모형, 등으로 대상주택을 안내하오니,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표현시 오기나 오류가 있을 수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분양사무소)에 비치된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59	69A	69B	69C	84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2	1	1	2	2	8
	국가유공자	1	1	1	2	2	7
	장기복무 제대군인	1	0	0	2	2	5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0	0	2	2	5
	중소기업 근로자	1	1	1	2	2	7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6	3	3	10	10	32
신혼부부 특별공급		12	6	6	20	20	6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	1	1	3	3	10
생애최초 특별공급		6	2	2	10	10	30
합 계		32	15	15	53	53	168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32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경상북도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경북남부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32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포항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경상북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인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사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64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tr><td rowspan="2">주 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0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 입주자자촉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포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30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포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표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7,839,208원	9,222,467원	9,222,467원	9,611,741원	10,111,430원	10,611,119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160% 이하	7,839,209원~ 9,648,256원	9,222,468원~ 11,350,728원	9,222,468원~ 11,350,728원	9,611,742원~ 11,829,835원	10,111,431원~ 12,444,837원	10,611,120원~ 13,059,838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9,648,257원~	11,350,729원~	11,350,729원~	11,829,836원~	12,444,838원~	13,059,839원~
	1인 가구	160%이하	~9,648,256원	~11,350,728원	~11,350,728원	~11,829,835원	~12,444,837원	~13,059,838원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648,257원~	11,350,729원~	11,350,729원~	11,829,836원~	12,444,838원~	13,059,839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포항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tr><td rowspan="2">주 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포항시,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의 지역에 거주하여도 포항시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합니다.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 주택형, (전용 85㎡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정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정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정제 접수)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가정제 개요(가정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청약가점제 적용기준” 및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에서 확인 바랍니다.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 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 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 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무주택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 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제출)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분리세대 또는 단독세대의 경우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미만(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만18세 이상 미혼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만18세이상~만30세미만: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만30세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35	
		3명	20	-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 자동계산 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총점	84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노부모 특별공급 제외)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분	내 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1.12.13.(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	2021.12.14.(화) 09: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1.12.15.(수) 09: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 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 「세대구성원 동의」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시 : 2021.12.23.(목)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일시 : 2022.01.03.(월)~2022.01.05.(수) 3일간 (10:00~16:00) 장소 : 남포항 태왕아너스 건본주택 (주소 : 포항시 북구 죽도동 647-1)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건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청약홈(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을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http://phphonors.com)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쏠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1.12.23.(목) ~ 2022.01.01.(토)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0일간 조회가능)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10일간)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1.12.23.(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전화(ARS)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주자(예비)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정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정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정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정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정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포항시 거주신청자가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정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유의사항

구 분	선 정 방 법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해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세대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세대를,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세대를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세대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공급일정은 추후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 제한기간 등이 적용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에 견본 주택에 방문하시어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 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상기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 받아, 계약 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 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 체결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서류제출기간 및 장소

구 분	서류 제출 기간	서류 제출 장소
정당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특별공급, 일반공급)	• 2021.12.24.(금) ~ 2022.01.01.(토) (9일간, 10:00 ~ 16:00) • 특별공급 당첨자: 특별공급 서류 및 계약체결 서류 지참 • 1,2순위: 계약체결 서류 지참 ※당첨자 검수일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원활한 계약체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비당첨자의 당첨자 검수일은 정당계약일 이후 추후 공지에정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서류 제출방법이 변경될 수도 있으며 제출방법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647-1번지

■ 공통(특별,일반) 사전제출서류 (예비당첨자 포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특별/일반] (예비당첨자포함)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	접수 장소에 비치 인터넷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청약한 경우 생략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주택공급신청용(본인발급용)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계약불가)
	○		신분증, 인감도장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본인 서명으로 대체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1순위 자격요건 및 해외장기체류여부 확인 (과거내역 전부 포함하여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세대원	해외장기체류여부 확인, 1순위 자격요건 및 부양가족 인정기준 확인 (과거내역 전부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만 30세 미만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특별공급 사전제출서류 (추가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확인,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본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자녀	재혼 가정의 자녀일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청약 가정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 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피부양 직계비속 직접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만 30세 미만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자녀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본인	공고일 이후 발행분 (발급처 : 해당직장 / 세무서) / 근로자 : 재직증명서 제출, 종합소득세신고자 : 사업자등록증 제출 ※ 재직증명서 제출시 회사직인날인필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세)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FAX수신 문서 가능)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증빙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표1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증빙서류) ※FAX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불가, 서류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 가정의 자녀일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비사업자의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생애최초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혼인사실여부확인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본인	공고일 이후 발행분 (발급처 : 해당 직장 / 세무서) / 근로자 : 재직증명서 제출, 종합소득세신고자 : 사업자등록증 제출 ※ 재직증명서 제출시 회사직인날인필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세)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FAX수신 문서 가능)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청약자 5개년도 소득증빙서류	본인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자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FAX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서류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소득증빙서류	본인 (과거년 소득)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만 1년 (전년도 입주자모집공고 월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중 소득세 납부 이력 증빙)
	○			만 19세이상 세대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과거 1년 이내 소득입증서류 (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		소득세 납세사실증명 (5개년도)	본인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서 제출자 중 소득세가 발생한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해당년도전부)	본인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소득세가 발생한자로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자녀	만 18세 이상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비사업자의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인장	대리인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서류미비 시에는 접수 불가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일반공급 (가점제) 사전제출 추가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구비서류	비고
	필수	추가 (해당자)				
일반공급 (가점제)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그 배 우자 모두 무주택자로 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자촉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	
해외 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안됨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되지 않음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본인 및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표1> 신혼부부특별공급 소득입증 제출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규칙 제2조제2호의2에서 정하는 성년자로서 규칙 제2조제2호의3에 해당하는 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국민연금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신규사업자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계약시 작성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는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타 예외사항

- 군복무중이어서 소득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종교기관(교회, 사찰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합니다.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 평균소득이 산정됩니다.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 자격이 인정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 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 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 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 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 평균소득을 산정

▣ <표2> 생애최초특별공급 소득인증 제출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의 소득 인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인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국민연금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신규사업자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계약시 작성

▣ <표3> 생애최초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소득세납부 인증서류

※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아래의 서류로서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5개년도 이상이라 함은 통산 5개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하며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합니다. (1년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

해당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 해당 직장 * 세무서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 세무서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및 자영업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 신고서(종합소득금액 증명 제출자에 한함)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 놓여준 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해당연도 내 환급받지 못한 자 또는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직접납부자는 납부내역증명을 함께 발급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①,② 세무서 * ③ 해당 직장 * ④ 해당 직장 / 세무서
--	--	---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는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모든 제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 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VII 계약 체결 및 기타유의사항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서류와 해당 추가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약 체결 기간	계약 체결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일시: 2022.01.03.(월)~2022.01.05.(수) 3일간 (10:00~16:00)	장소: 사업주체 건본주택 (포항시 북구 죽도동 647-1번지) ※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관련 정부지침변경 및 지역감염자 등에 따라 계약체결기간이 변동 또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 (특별/일반공급)	자격검증 미제출자	○		자격검증서류 (사전서류미제출자)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일체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자격검증 사전서류 제출자		○	추가 개별통지 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	건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전서류 제출 시 제출한 경우 제외)	본인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계약 불가함)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 계약 불가하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조날인 확인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등록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등기부등본)	해당 주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해당 주택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주택	주택공시가격증명원(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포함)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주택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 사실 무효확인서 등
대리인 계약시 추가 사항 (본인 외 모두 제 3자로 간주함)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계약 불가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사업주체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03.)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 정당 당첨자가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2021.05.28. 개정 및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거하여 분양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여부를 검색하여 부정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으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 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단, 세대당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행정구역,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주택형의 경우 승강기와 세대현관문이 대면으로 배치 되어있으며 시행 또는 시공자는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고지 의무는 없으며 계약체결 전 계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설계와 관련하여 시행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분양사무소)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 및 설계사항 등 모든 사항과 계약서 내용 및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모두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시 당해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자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간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자가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관리(안내, 고지 등)를 위해 계약체결 시 2011년 7월 29일부터 새로운 법정주소인 도로명 주소(행정안전부 안내 참고)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시 도로명 주소가 명기된 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종전 지번 기존주소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한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공급계약서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합니다.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1년, 수도권외의 지역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정제 점수(가정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정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고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2018.05.04.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주변도로의 비산분진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이후에도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전원(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함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함)

■ 유주택자로 보는 경우(예시)

- 건축물관리대장(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기되어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일부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복합용도 건물을 소유한 경우
- 분양주택(LH, 지방공사 등)으로서 사업주체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있으나 사실상의 소유자로 재산세를 부과하였거나 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 건물이 있으나,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에 따라 건축물관리대장(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된 경우
- 별장으로 과세되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였으나 건축물관리대장(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매입임대사업자가 사업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정당당첨자가 정당계약을 하거나, 정당계약을 포기하고 해당 단지의 잔여세대를 추가 계약한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주택의 순위 내 청약에서 공급 가구 수보다 많은 청약자가 신청해 경쟁이 발생한 주택유형(타입)을 선착순으로 계약한 경우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하나은행	150-910066-97404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로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내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분양대금은 약정된 2차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 시 비고란에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403호 홍길동: 1011403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동: 1020201홍길동)
- 당사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분양사무소)에서 일체의 현금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나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계좌의 예금주는 사업진행과정에서 임의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분양사무소는 대출취급 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당사와 분양상당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대출취급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되며,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당(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무이자”로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대출이 진행되며 그 이자는 사업주체가 부담하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타 금융기관 대출 시 미적용)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공지 및 안내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유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 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앞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과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대출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대출 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금액을 본인의 책임으로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금은 사업주체, 시공사 및 중도금 대출기관과 체결되는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하여 사업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에서 중도금 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 등이 지정하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로 하고, 최초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 는 사업주체 등이 부담(납부)하며 (단, 사업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비용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 는 해당하지 않음), 최초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 는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중도금의 지연이자 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일부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 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은행과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 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출취급(보증)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은행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은행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해당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부동산 정책 및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담보비용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금액 중 일부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입주자 사전점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당사는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점검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

▣ 입주예정일 : 2024년 04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예정임)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전염병,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청 또는 관련 기관(교육청)에서 입주예정일을 앞당길길 요청할 경우 사전 공지에 의해 앞당길 수 있으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자가 이를 배상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제세공과금을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추후 당사가 안내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할 경우 열쇠불출일로부터)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세대 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에는 열쇠불출일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며, 인테리어 공사시 발생하는 쓰레기, 폐기물 등은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 대출 상환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아파트 사용승인일(임시사용 승인시는 그 승인일)과 분양대금 잔금납부일 중 늦은 날을 취득일로 보아 60일 이내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이전절차를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반피해 및 공과금은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취득세 부과·징수기관에서 정한 비율이상의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잔금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득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취득세 납부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반드시 관련기관에 별도 문의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계약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옥외 주민운동시설, 옥외 어린이놀이터 2개소, 맘스스테이션, 관리사무소, 보육시설), 지하주차장 등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 높이

– 주차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 **지하 1, 2층 차로 높이는 2.3m이상**이며 출입구의 높이는 2.3m입니다.

■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적용됨

VIII 발코니 확장 및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

	59	69A	69B	69C	84
발코니 확장금액	무상	무상	무상	무상	무상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아파트는 전세대 발코니 확장공사비용(부가세포함)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하오니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무상제공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계약자 부담입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은 주택형 59형(7,010,000원), 69A형(7,690,000원), 69B형(8,280,000원), 69C형(6,890,000원), 84형(8,820,000원)이며, 발코니 확장형을 기본으로 공급함에 이는 무상 공급합니다.(부가세포함)
- 상기 발코니 확장은 일괄 확장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의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로 인한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되었습니다.

발코니 확장 공사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홍보자료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경도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가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 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상제공품목

구분	주택형	품목	비고
무상 제공	59, 69A, 69C, 84	알루미늄 3연동 현관 중문	
	69B	여닫이 중문	
	전타입	하이브리드 쿡탑	
		빌트인 전기 오븐	삼성
		광폭 싱크볼	
		터치형 싱크 수전 및 센서식 절수기	
	84	고급 아일랜드 주방 후드 : 하츠 스퀘어	하츠

추가선택품목

시스템 에어컨 옵션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품목	제품 사양	공급금액	비고
59 69A,B,C	에어컨 선택 1	2대 / 거실+침실1	3,800,000	LG/삼성 선택 옵션
	에어컨 선택 2	4대 /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100,000	
	에어컨 선택 3 (공기청정형)	2대 / 거실+침실1	4,400,000	
	에어컨 선택 4 (공기청정형)	4대 / 거실+침실1+침실2+침실3	7,200,000	
84	에어컨 선택 1	2대 / 거실+침실1	3,900,000	
	에어컨 선택 2	4대 /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500,000	
	에어컨 선택 3 (공기청정형)	2대 / 거실+침실1	4,500,000	
	에어컨 선택 4 (공기청정형)	4대 / 거실+침실1+침실2+침실3	7,500,000	

■ 인테리어 옵션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품목	제품 사양	공급금액	비고
59	거실 / 주방 바닥 타일	포세린 타일(600*600)	1,000,000	
	주방 벽 /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롯데_아카시아 AC711	2,200,000	레디언스 V1급
69A,B,C	거실 / 주방 바닥 타일	포세린 타일(600*600)	1,200,000	
	주방 벽 /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롯데_아카시아 AC711	2,400,000	레디언스 V1급
69C	복도벽체타일	포세린 타일(600*1,200)	800,000	
84	거실 / 주방 바닥 타일	포세린 타일(600*600)	1,400,000	
	주방 벽 /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롯데_나폴리 베이지 VB278	3,000,000	레디언스 V2급
	알파룸 대형 팬트리	알루미늄 슬라이딩 도어 + 시스템 선반	2,400,000	

■ 빌트인 가전 옵션

[단위 : 원, V.A.T포함]

품목	주택형	제품 사양		공급금액	비고
현관 공기청정 시스템	전타입	AS-150(에어샤워) + DSC-300(에어브러시)		730,000	그렉스
식기세척기	전타입	DW60T7065SS		850,000	삼성
에어드레셔	69A,B,C 84	클래식화이트 : DF60T8300WR		1,400,000	
비스포크 고급 인덕션	59	선택1	글램그리너리 : NZ63A8708XU	880,000	
		선택2	글램화이트 : NZ63A8708XW		
	69A,B,C 84	선택1	글램그리너리 : NZ63A8708XU		
		선택2	글램그레이 : NZ63A8708XG		
비스포크 냉장고+냉동고	59	선택1	코타화이트(냉장고) : RR40A7895AP + 코타화이트(냉동고) : RZ34A7965AP	3,100,000	

		선택2	코타화이트(냉장고) : RR40A7895AP + 코타그리너리(냉동고) : RZ34A7965AP		
비스포크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69A,B,C	선택1	코타화이트(냉장고) : RR40A7895AP + 코타화이트(냉동고) : RZ34A7965AP + 코타그리너리(김치냉장고) : RQ34A7845AP	4,800,000	
		선택2	코타화이트(냉장고) : RR40A7895AP + 코타화이트(냉동고) : RZ34A7965AP + 코타차콜(김치냉장고) : RQ34A7845AP		
	84	선택1	코타화이트(냉장고) : RR40A7895AP + 코타그리너리(냉동고) : RZ34A7965AP + 코타화이트(김치냉장고) : RQ34A7845AP		
		선택2	코타화이트(냉장고) : RR40A7895AP + 코타차콜(냉동고) : RZ34A7965AP + 코타화이트(김치냉장고) : RQ34A7845AP		

■ 추가선택품목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별도로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품목별 계약금이 상이하며, 계약 전 반드시 계약금 및 계약조건, 납부일정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시공사와 고객 간 직접계약 및 설치가 진행되고, 제품사양은 견본주택 및 CG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계약일정, 납부일정, 납부계좌 등)은 견본주택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 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추가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제시된 제품은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이며 견본주택에 일부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동가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이 불가하며, 계약금 납부 이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여건에 맞게 설치되는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제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도산, 품질 및 현장시공 상황 등에 따라 입주시 동등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을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미설치 타입은 설치타입 기준의 마감재로 설치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9, 69A, 69B TYPE)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공사비(부가세포함)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제품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은 동일 제품일지라도 산정기준 및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타일 바닥 마감재 선택 시 명기된 부위 외에는 기본형 강마루가 시공되며 정확한 적용부위는 CG를 참고 바랍니다.

- 엔지니어드 스톤 적용 시 재료의 물성에 따라 재료 간 이음매가 발생합니다.
- 식기세척기 선택 시 제품 전면부에 주방 가구마감과 동일한 색상의 가구 판넬이 부착됩니다.
- 빌트인 냉장고 SET , 식기세척기, 에어드레서 옵션품목 미선택시에는 선택 내용에 따라 각각의 기본형 가구가 설치됩니다.
- 현관청정시스템은 본체에 설치된 종이주머니에 흡입물이 쌓이는 방식으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관리 주기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 SET 옵션 미선택시 냉장고 상부장이 설치되며, 일반 냉장고 설치시 냉장고가 상부장보다 돌출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가전 옵션 품목들은 제품 특성상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며 사용시 소음, 진동 등으로 일부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타입별 시스템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주택형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미선택 계약세대의 경우 거실, 침실1에 냉매배관만 시공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므로 거실+침실1에 설치되는 매립 냉매배관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의 추가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침실2, 침실3에 별도의 냉매배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 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실외기 크기는 옵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템에어컨의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별도의 IoT, 홈네트워크 와 연동되는 제품입니다.
-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시스템에어컨옵션 / 인테리어 옵션 / 빌트인 가전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안내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하나은행	150-910067-00204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금액 납부계좌와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추가선택 품목 계약금은 상기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송금(건본주택 현금수납 불가)하시기 바라며, 입금시 계약할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102동503호 홍길동 →1020503홍길동(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지정된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구분	주요내용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홈페이지 및 팜플렛, 건본주택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및 소득 기준 초과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분이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 기간(당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계약체결불가, 당첨일로부터 1년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1·2순위)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특별공급 당첨자는 향후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고(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청약통장 사용 당첨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 및 계약 시 분양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당사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 신청접수는 특별공급 유형별, 일반공급 순위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여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 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견본주택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마감재 수준 향상이나 개인 선호도 반영을 원할 경우 잔금 완납 후 계약자 스스로 적법하게 인테리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견본주택으로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주소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인허가 및 실시공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동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난간의 디테일, 축벽문양, 입면, 환기용캡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상 자전거 보관소, DA(기계·전기실·발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및 쓰레기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해충, 매연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규모,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 차로 등에 인접한 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 출차주의 경보음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 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의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구조개선 및 마감품질 향상 등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변경인·허가를 진행합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공동주택에 적용된 각종 입면 색채 및 문양, 마감디자인은 외관 디자인 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색채 심의 및 지자체 자문 등으로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건립으로 유입되는 초등학교는 사업지 인근 신설 초등학교(가칭 용산초)에 배정 예정입니다. (단, 본 사항은 포항시 교육지침의 계획으로 인해 향후 별도의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설계관련 주요사항	1. 일반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착공 이후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으로 인해 경미한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중대한 설계변경인 경우 추후 준공시 입주자 사전 점검시 공지 예정입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위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 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옹벽,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동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및 기타 「주택법」,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 시에 제시된 CG[컴퓨터그래픽],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 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계획승인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합니다. • 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 본공사 시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실별 가구(장롱, 불박이장 등)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단위세대 실별가구의 실사이즈는 마감, 단열재두께의 차이 등으로 도면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특성상 위치, 크기, 동선 등의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경로당,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등)의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 사항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및 기타 공용면적(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은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됩니다. • 면적 계산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 차이로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에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이삿짐용 사다리차 진입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입주자)는 본 계약 외 발코니 확장부위에 개인적으로 시공·설치한 바닥단열 및 마감재, 샷시, 실외기실 루버 등의 제반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에 의거 배분되었고 위치를 지정 또는 할양하지 아니하며 대지지분의 분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단지조경(녹지) 등의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 등은 현장 실시공시 카탈로그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일부 세대는 인접 건물에 의해 조망, 일조 등이 침해 될 수 있으니 청약예정자 및 계약예정자는 필히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케팅을 위하여 제작된 약도 및 지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위한 제작물 이므로 청약예정자 및 계약예정자는 필히 현장 및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단지 및 세대 도면이 비치되어 있사오니 청약예정자 및 계약예정자는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필로티에 설치된 자전거보관대 등의 시설 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각 부대시설과 가까운 주동의 경우 이동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부대시설이 계획된 주동 및 근처 인접 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전 모형 및 단지 현황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무인택배보관함이 계획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사이즈, 기동 및 주변상황) 및 자재수급 등에 의해 분양시 공고된 자료와 일부 차이가 발생 될수 있습니다.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서의 총 에너지 절감율 및 이산화탄소 저감율의 값은 계산 결과 값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저수조 등 입주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도시가스 정압기가 지상 혹은 지하에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및 냄새 등의 영향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	--	--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 및 벽체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램프와 인접한 동은 차량통행 및 출차표시등에 의한 소음과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은 일부 동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고, 사용 및 유지보수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단지배치	•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공사 시 대지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의 도로와의 레벨차로 인해 형태, 마감, 크기 등은 현황 레벨 및 현장여건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재 대지경계가 인접 건물과 간섭이 되는 등 대지경계의 조정에 따라 사업부지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전 건본주택을 방문하시어(사업승인 설계도서 비치) 단지 내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하여 설계하였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 방문은 가능하나,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계약자는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 실시공시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구조 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 변경, 통합, 사용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및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최고 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입니다. • 호수별 조망권은 주변 개발 행위 등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등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경보음 포함) 및 자동차 전조등, 보안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어린이 놀이터, 쓰레기분리수거장, 주민공동시설 등) 설치로 인해 해당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도면 및 모형 등을 통해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상부로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용 구조물과 천창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환기용 구조물과 지하주차장 램프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량동선 등은 사업추진과정(인 · 허가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방충안테나, 피뢰침, 이동통신 설비, 경관조명 설비, 태양광 설비, 항공유도등 등의 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며, 채광 · 환기창의 설치위치는 호 · 라인 및 배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각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 각동 주출입구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홍보물(모형, 조감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외부 색채, 포장재, 시설물 등의 세부 사항은 본 공사 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협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D/A(설비 환기구) 등의 노출이 있어, 통행로 등의 사람이 유입되는 공간에 인접한 경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및 E/V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위치 및 사용상의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도난이나 기물파손 및 범죄예방을 위한 단지내 CCTV설치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과 공동주택(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면한 인접 도로 등의 레벨 조정으로 인해 단지 경계부에 설치되는 경사면, 계단, 램프, 옹벽 등의 종류 및 위치, 노출범위(높이/길이), 형태, 마감사양, 디자인 등이 현장여건에 맞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관 인·허가 및 현장 상황에 따라 단지내/외 도로(인도, 차도, 비상차량 동선 등),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입주자는 이의 없이 동의하며, 입주자에게 변경사항에 대해 추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조경공간 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과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 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 전주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에 따른 동간거리로 인한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 배치도상의 비상차로 동선 및 보도의 폭은 추후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은 보행자들로 인해 소음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계획승인 변경,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단지 배치,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대지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 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주 형태, 위치,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DA(설비 환기탑), 쓰레기 분리수거장, 지하주차장 천창 등의 위치를 계약 전 반드시 확인 바라며, 이로 인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진동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산책로, 단지 내외 도로 등에 의해 생활권과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쓰레기보관소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입주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승강기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 내 지상 도로가 없는 세대는 입주시 이삿짐 운반시 승강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지 내 지상 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 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한전 가공인입선으로 인해 저층부 조망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단지 북, 동, 남측 도로의 경우 확폭 및 신규로 조성되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로서 공공보행통로로 이용될 수 있으며 관리청에 도로시설물 기부채납 될 예정이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 단지 주변 서측의 교통소음에 따른 소음 및 진동에 관련하여 단지 전층에 대하여 적합한 소음영향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실내소음도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결과가 예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자는 교통소음에 따른 소음 및 진동에 관하여 시행, 시공사에게 어떠한 민원 및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아파트 주동	• 주민공동시설, 실외 어린이놀이터, 실외 휴게소, D/A(설비 환기구), 오수저류조(배기덕트 포함),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근린생활시설,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진동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속도 및 사양은 다르며,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외부색채, 입면(창호형태 등) 및 옥상구조물 등은 인허가 및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옥상 난간턱 높이,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공용부의 창호 사양, 위치, 크기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차이에 대한 정산은 하지 않으며, 선홍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항공유도등은 전체 동의 측면 부 및 옥탑층 등의 위치에 설치 될 수 있음. 설계에 따라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세대에서는 빛공해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공용부 마감이 다소 매끄러운 타일 또는 바닥 화강석 물갈기 제품이 적용될 경우 미끄러짐에 주의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시공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상가 이용자들에 의해 일부세대는 일부 소음, 빛공해, 냄새 등으로 피해가 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어린이 및 유아놀이터가 위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주변에는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됩니다. • 101동 후면, 102동 전면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며, 인접한 저층세대에서는 조망권, 환경권, 소음, 진동 등 사생활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3동 1층에 맘스레이션이 설치되며, 인접한 저층세대에서는 조망권, 환경권, 소음, 진동 등 사생활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4동 옥상층 방송공동수신설비 및 옥탑지붕층에 방송공동수신안테나가 설치됨. • 104동 1층에 관리사무소, 경비실이 설치되어 인접한 저층세대에서는 조망권, 환경권, 소음, 진동 등 사생활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5동 1층에 어린이집이 설치되며, 인접한 저층세대에서는 조망권, 환경권, 소음, 진동 등 사생활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6동 1층에 경로당이 설치되어 인접한 저층세대에서는 조망권, 환경권, 소음, 진동 등 사생활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에 위치한 단지 출입구에는 문주가 설치되며,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에서는 문주설치로 인한 세대 조망에 간섭 및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위치한 지하주차장 출입구 진입램프에 위치한 인접한 저층 세대에서는 차량 소음 등에 의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상 및 최상층부에는 항공유도등, 경관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접한 세대에서는 빛공해, 시야간섭, 환경권, 소음, 진동 등 사생활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단위세대	• 단위세대 창호는 계약전 견본주택에서 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 시 동질·동급으로 브랜드 혹은 사양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는 기본으로 설치되는 마감재 이외 별도의 옵션과 전시품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해당 전시품이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시공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불박이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아일랜드장, 욕실장, 욕실거울, 욕조, 위생도기류 등 은폐부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현관 바닥/거실 아트월/주방 벽/욕실 벽 및 바닥/발코니 바닥의 타일 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경량벽체에는 액자, 선반 등 하중을 견디는 고정 가구 및 기계의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시공시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발코니 확장시 창호는 이중창호[PL창]가 설치되며, 창호사양(유리종류, 하드웨어, 창틀, 창틀색상, 크기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외부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인접 세대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바닥 또는 벽체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 설비 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세대의 천장 부위에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우물천장 깊이, 등박스의 크기, 시스템에어컨, 스프링클러 헤드, 원형 디퓨저 등 천장부분이 변경(위치 및 깊이 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청소용 수전,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창호 설치 기준은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주동 옥상 난간대 및 발코니 난간대의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 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환기시스템은 실외기실 내 설치되며, 층별로 설치위치가 상이합니다. •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사용, 장시간 음식물조리, 실내빨래 건조대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전기, 설비공사상 일부 노출배관의 시공이 불가피할 경우 실사용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 방향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발코니 단차의 형태, 위치 및 레벨은 실제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내용은 형별, Type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설계 및 시공상의 이유로 세대의 모든 난간대 형태 및 재질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후 현장상황에 따라서 단위세대 커튼박스 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분전반은 침실 출입문 뒤편에 통신단자함은 현관에 설치되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위치나 크기 등을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세대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은 본 공사 시 설치 위치 및 디자인과 크기는 변경 될 수 있고, 실내 벽면에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시
--	---------	---

		커버가 돌출됩니다. • 실외기실 도어의 개폐 방향은 견본주택 및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바닥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됩니다. 실외기실 바닥은 타일 마감되며, 피난구에는 타일 마감이 되지 않습니다. 피난구는 누수 방지를 위해 바닥 마감보다 돌출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실외기실 천정에는 전열교환기가 설치되고 설치 위치는 상부 세대의 하향식 피난구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에는 실외기 및 전열교환기 외 피난 동선에 방해가 되는 다른 어떠한 적재물이 없어야 합니다. • 하향식 피난구는 필로티 상부세대를 포함한 최하층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보일러가 설치되는 다용도실 또는 창고, 발코니, 실외기실 등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탈출형 피난시설이 설치되므로 계약시 필히 확인하고 탈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설치/적재해서는 안됩니다. • 세대별 하향식 피난사다리를 통해 위층, 아래층 생활소음이 전달될 수 있으며 부주의에 의해 피난사다리 개방시 아래층 세대에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사용법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또한 대피공간 도어와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서로 간섭되지 않도록 대피공간 출입문 하부턱의 높이는 시공과정에서 견본주택과는 달리 시공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피공간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외부 돌출형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며, 설치위치는 층별로 상이하며 최하층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위층, 아래층 생활소음이 전달될 수 있으며 부주의에 의한 피난구 개방 시 아래층 세대에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재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일부 설치됩니다. • 목창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 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LGU+의 스마트홈서비스는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고, 3년 후 서비스 신청 입주인에 한하여 월 과금 예정입니다.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세대내 설치된 조명, 난방, 가스밸브 및 무인택배 등의 상태 조회 및 제어가 가능하며,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 IOT호환이 되는 가전기기까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춥니다. • 기본으로 제공되는 세대 내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 가스, 난방제어 등) 외 스마트 가전제품(공기청정기, 가습기 등)은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해야 하며, 반드시 LGU+ IOT와 호환되는 모델이어야 합니다. • 스마트홈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입주인이 반드시 세대 내 무선인터넷(WiFi-AP)가 설치되어야 하고(통신사 무관), 아파트 단지 네트워크 망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제어방식에 따라 일부 기기는 별도의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조건은 사용자와 LGU+ 계약내용에 준하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음) • 스마트홈 서비스 관련하여 추후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LGU+의 사업 정책에 따라 60일 전 예고 후 종료될 수 있으며, 세부 이용 조건은 (주)LGU+의 서비스 계약 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과 영상의 IOT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시 미구현 또는 성능 개선등 서비스 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세대 내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설치할 경우 불법제품(인증제품 구조를 변경한 제품 또는 불법제품)의 설치를 금하며, 불법제품 설치로 인한 공공하수도 막힘, 악취 등 문제발생 시 일체의 책임은 입주인에게 있습니다. • 주방싱크장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벽걸이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간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에어컨 냉매 배관은 침실1과 거실에만 일괄 설치되어 위치별로 선택 할 수 없으며, 추가적인 위치에 에어컨 설치시 별도의 냉매 배관 공사가 필요하며, 이는 입주자가 직접 공사하여야 합니다. (단, 천장형에어컨을 옵션으로 선택한 세대는 기본제공되는 침실1/거실 냉매 배관 및
--	--	--

		에어컨용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음.) • 현관중문 디자인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설치하는 품목으로써 분양계약 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 할 수 없습니다. • 현관중문은 장식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도어가 아닙니다. • 현관중문은 본 공사 시 제조사 및 규격,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중문 하부틀로 인한 단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부대시설	•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환경권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사업계획승인 변경 또는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 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및 규모,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동지하,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 벽체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차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각 실 크기 및 위치, 창호크기, 위치, 재질, 외부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이 각 동 전후 면에 설치될 수 있으며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분리수거함의 위치 및 규모, 개소는 동별 이용자의 편리성과 수거를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 및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 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에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아파트용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가칭)“주민자치협의기구”를 통해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나 시공사에 시설물의 사용에 대해 그 어떠한 요청이나 중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추후 시설 이용 시 이로 인한 인근세대 소음유입 등의 환경권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 내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부 주차면은 기둥과 간섭으로 운전석 및 보조석 승하차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 유효높이 및 지하1층 주차장 차량 통행구간의 유효높이는 2.3m, 지하2층 주차장 차량 통행구간의 유효높이는 2.3m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차량의 경우는 지하주차장 출입이 불가합니다. (지하주차장 층고 최적화를 위해 층 내부에서 일부 구간은 천장고가 다를 수 있음.) • 아파트 주차대수는 총 423대로 계획(장애인주차, 전기차(완속)주차 계획 포함)하였으며, 차량동선에 의한 동별 주차 배분, 출입 동선의 길이 등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상부 및 벽체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지하 1층에 5개소(급속 1기, 완속 4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주차장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의 사용요금 및 전기기본료는 사용자 부담 방식으로 요금 납부하여야 하며, 미사용시 기본료는 공용부분 관리비로 세대 면적에 따라 균등 부과될 수 있음.)
■ 홍보물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 방문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포장,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을 위하여 제작한 제작물은 광고 · 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을 꼭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외 부동산, 전문투자자, 블로그(당사가 홍보자료를 제공한 블로그 포함), 인터넷 게시글 등의 자료는 당사와 무관함으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카탈로그 등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 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카탈로그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 바랍니다
■ 명칭	• 본 아파트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과정, 법규변경, 현장시공 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색채, 축벽 로고의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 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 견본주택은 아파트 84타입, 69C타입으로 시공되었으니, 그 외 타입은 기타 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기본형 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PVC창호,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동 등 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건립타입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미건립 평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에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 사양 및 위치(높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서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견본주택, 분양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적용된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 옵션품목 및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사업계획승인도서에 따라 시공 됩니다. • 본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상황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승인 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 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주변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본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분양가 미포함)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감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높이, 폭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 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 할 예정입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유니트, 환기디퓨저,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 내 등기구 조도량[lx]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한 된 것이며 본 공사 시 KS조도기준 동등 이상으로 적용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평형 및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과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실별 가구(장롱, 불박이장 등)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단위세대 실별 가구의 실사이즈는 마감, 단열재두께의 차이 등으로 도면 및 견본주택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동, 호수 지정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 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주변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주변의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스위치, 콘센트, 월패드는 성능 개선을 위해 구성 및 디자인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 분양자(매도인)는 당첨일 이후 계약체결시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 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 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함.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 분양자(매도인)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인하기로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에 의거 인증서 표기

■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적용)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 사용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자동점멸스위치를 설치

기타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리칼리 진도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구 분	등 급
내진능력	MMI등급 VII (0.239g)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I~VII)으로 표기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정보통신	소방감리
회 사 명	(주)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	(주)천일이앤씨	(주)건일씨엠	
감리금액	1,078,039,600	370,816,900	165,0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단위 : 원]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3412021-101-0000800 호	70,733,39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주택분양보증 약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 허위계약 ·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종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종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금관리 대리사무 주요사항 안내

- (주)하나자산신탁(이하 “자금관리사”라 한다)는 분양수입금등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수분양자의 중도해지에 의한 환불금 등)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 총액을 “자금관리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위해 분양수입금을 “자금관리사”에게 납부하기로 합니다.
- “자금관리사”는 부족한 사업비의 조달에 관여하지 아니합니다.
- "수분양자"는 "자금관리사"가 본 사업의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 반환 의무는 매도인"이 부담함을 확인하며, 향후 분양대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의 자금관리계좌 잔액이 분양대금 반환액보다 적을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한 자금조달 의무는 "매도인"의 책임으로 이행함을 확인합니다.
- 분양대금반환과 관련하여 매수인인 “수분양자”는 "자금관리사"에게 분양대금반환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 자금관리사인 (주)하나자산신탁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형태의 입금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자금관리사인 (주)하나자산신탁은 매도인을 대리하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본 공급계약상 공급금액을 수납하고 집행할 뿐 자금집행의 적법성 및 타당성 매도인의 책임 기타 어떠한 책임과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자금관리사	시행사	시공사
상 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바른투자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태왕이앤씨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403, 6층 603호(남일동, 태왕아너스타워)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403, 6층, 7층, 8층, 9층(남일동)
법인등록번호	110111-1714818	170111-0817249	170111-0412495

▣ 견본주택(분양홍보관) 및 현장 위치 안내

- 견본주택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647-1

- 사이버 모델하우스 : <http://phhonors.com>

- 분양문의 : ☎ 054-273-0700

- 주요 일정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당첨자 발표일:	정당 계약일:
2021.12.13. (월)	2021.12.14. (화)	2021.12.15. (수)	2021.12.23. (목)	2022.01.03.(월)~ 01.05.(수)

※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코로나19(COVID19) 로 인해 견본주택 운영기간 및 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입주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됩니다.